

인수 합병

M&A(인수합병) 거래는 일반적으로 표적회사의 사업이나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세금과 법적 문제에 따라 다른 거래 구조를 선호한다. 가장 일반적인 3가지 구조는 자산 매수, 주식 매수, 합병이다.

자산 매수

자산 매수에서는 매수자가 표적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한다. 자산 매수의 주요 이점은 매수자가 인수하기를 원하는 자산과 부채를 선택하고 인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제외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거래 구조는 사업부와 같은 회사 내의 단일 사업 단위를 인수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자산 매수는 매수자가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일부 부채(일부 환경 책임 포함)는 계약에서 제외되더라도 법에 의해 사업과 함께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자산을 매수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주식 매수나 합병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법률 작업을 해야 한다. 기계류 및 재고와 같은 일부 자산들은 간단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쉽게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산들은 상당히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상표와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등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보통 소유권 보증을 구입하고 부동산매매증서를 등재해야 한다. 매수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와 다른 분야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한 자산을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적절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매수자가 “양도 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상대방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면허 및 허가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일찍 확인하면 거래 종결의 지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식 매수

주식 매수에서는 매수자가 표적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주식을 주주로부터 인수한다. 자산 매수와는 달리, 표적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그 회사의 주식과 함께

이전되고(매수자가 원하는 자산과 부채를 선택할 수 없음), 또한 표적회사의 확인 및 공개되지 않은 부채도 인수해야 한다. 주식 매수 거래를 하는 매수자는 주식매수계약서에 표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증 같은 보호 조항을 삽입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식 매수 거래의 주요 이점은 단순성이다. 표적회사가 단순히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모든 자산은 표적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자산 매수 거래에서 종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양도증서와 제3자 동의 절차는 주식 거래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경영권 변경”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은 표적회사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파기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이러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적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표적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해야 하므로 주식 매수가 더 복잡해진다. 또한 매수자는 법원에 주식의 공정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 소수 주주를 “스퀴즈아웃” 해야 할 수도 있다.

합병

합병에서는 매수자가 표적회사와 법률의 적용에 의해 두 사업체가 하나가 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표적회사의 주주는 매수회사의 주식이나 현금을 받거나, 또는 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받는다. 이러한 합병에서는 매수자가 새 자회사를 설립하여 표적회사와 합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병에는 매수자, 매수자의 자회사, 표적회사의 3 당사자가 관련되므로 “3각합병”이라고 한다.

합병은 자산이 제3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이전(위에 언급된 “경영권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주식 매수와 유사하다. 또한, 주식 매수와 마찬가지로, 매수자는 표적회사의 확인 및 미확인 부채를 모두 인수한다.

합병거래의 한 가지 이점은 보통 표적회사의 다수 지분 소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은 이 점에서 각 주주가 주식 매도에 동의해야 하는 주식 매수와 다르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법원에 주식의 공정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

표적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매수자는 합병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받으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하므로 매수자와 매도자는 서로 협조하여 주주총회 준비를 하고 주주의 대리인들이 합병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도록 권유해야 한다.